

##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주 전역 가향 담배 판매법

### 질문 1: 캘리포니아에서 가향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답: 예. 대부분의 가향 담배 제품 및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 판매는 캘리포니아 소매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향 담배 제품의 정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니코틴 또는 기타 기화 액체를 전달하는 가향 전자 담배(전자 담배), 전자 액상, 멘톨 담배, 가향 소형 시가 및 시가릴로, 가향 무연 담배, 가향 블런드랩 및 가향 루스리프 (담뱃잎) 셀프 롤링 담배. 주법은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에도 적용됩니다(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질문 4 참조). 이는 도매 가격이 \$12 이상인 가향 루스리프 파이프 담배 또는 가향 프리미엄 시가의 소매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향 시사(후카 담배)는 21 세 이상 성인만 상시 구내에 입장할 수 있고, 담배 판매와 관련된 모든 주 또는 지역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주 (또는 지역 법률)을 준수하는 허가된 상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구내에서 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구내의 담배 사용에 관한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

### 질문 2: 캘리포니아에서 가향 담배 제품을 사는 것은 불법입니까?

답: 아니요. 주법의 처벌은 가향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을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할 의도로 소유한* 소매업체 또는 담배 소매업체의 대리인이나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주법을 준수하는 것은 소매업체의 책임입니다. 주법은 가향 또는 무향 담배 제품을 사용할 의도로 구매, 사용 또는 소지하는 이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b)(1))

### 질문 3: 주법은 언제 발효됩니까?

답: 주법은 투표 결과가 인증된 후 5일 후에 발효됩니다. 국무장관실의 투표 결과 인증은 12월 16일까지이므로, 소매업체는 늦어도 12월 21일까지 법이 적용되는 가향 담배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16일 이전에 투표 결과가 인증될 수도 있으므로, 소매업체는 이러한 제품의 판매를 더 빨리 중단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매업체는 [국무장관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4: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란 무엇입니까?

답: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에는 제품에 담배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배 제품에 향미를 추가할 때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포함됩니다. 주법에서는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를 "담배 제품에 첨가될 때 특징적인 향미를 내도록 설계, 제조,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a)(15))

**질문 5: 주법이 적용되는 소매점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답: 본 주법은 건물에서 소매점 및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여 가향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 적용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 (a)(11))

**질문 6: 민트 또는 멘톨 향이 주법에 포함됩니까?**

답: 예. 주법에 따르면, "특정 향미"는 민트와 멘톨 향을 포함합니다. 연방법은 민트 담배의 판매를 이미 금지하고 있고, 주법은 현재 모든 멘톨 담배의 소매 판매와 모든 민트 및 멘톨 전자 담배, 소형 시가 및 시가릴로, 무연 담배, 루스리프 셀프 롤링 담배, 그리고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1 U.S.C § 387g(a)(1)(A),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a)(1))

**질문 7: 어떤 유형의 가향 담배 제품이 주법에 포함됩니까?**

답: 주법은 모든 멘톨 담배, 가향 전자 액상, 가향 소형 시가 및 시가릴로, 가향 무연 담배, 가향 블런트랩, 가향 루스리프 셀프 롤링 담배 및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소매점과 자판기에서 금지합니다. 니코틴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가향 전자 담배의 소매 판매도 금지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

**질문 8: 니코틴 또는 기타 액체를 흡연하거나 피우는 데 사용되는 전자 담배 및 기타 장치가 주법에 포함됩니까?**

답: 예. 전자 담배 또는 니코틴 또는 기타 기화된 액체를 전달하는 기타 장치가 가향 전자 액상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전자 액상에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향 담배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a)(4)). 전자 담배 또는 기타 장치가 있는 그대로 판매되고 어떤 종류의 향료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은 주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니코틴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 담배 및 기타 담배 제품 부속품, 구성 요소 또는 부품은 담배 제품으로 간주되며 21 세 이상 성인에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495(a)(8)(A) 및 사업 및 직업법 22958(a)(1))

**질문 9: 가향 아로마테라피 또는 에센셜 오일 베이프 펜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가향 아로마테라피 또는 에센셜 오일 베이프 펜은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배 제품의 정의에 포함되며, 더 이상 캘리포니아 소매점에서 판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법은 담배 제품을 "전자 담배, 시가, 파이프 또는 후카 담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니코틴 또는 기타 기화된 액체를 장치에서 흡입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자 장치"로 정의하고, 이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향이 나는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a)(14))

**질문 10: 담배 제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담배나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 주스 향미 강화제는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주법에 따라 향료를 추가할 목적으로 담배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 또는 물질의 소매 판매는 담배 또는 니코틴 함유 여부에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주법은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를 "담배 제품에 첨가될 때 특정 향미를 생성하도록 설계, 제조,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되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a)(15) 및 (b)(1))

**질문 11: 가향 담배 제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 주법은 제품에서 생성될 수 있는 연기, 증기 또는 에어로졸을 포함하여 사용 전이나 사용 중에 담배 이외의 맛이나 냄새가 나는 대부분의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합니다. 담배, 물 또는 재생 담배를 제외하고 제품에서 구별이 가능한 맛이나 향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제공되며 최종 제품 생산 중에 제조업체가 추가한 첨가제가 있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체(또는 그 대리인 또는 직원)가 담배 제품에 특징적인 향이 있거나 이를 생성한다고 진술하거나 주장한 경우, 담배 제품에 향이 첨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담배 제품에 특정 향미가 있음을 전달하거나 암시하는 담배 제품의 라벨링 또는 포장에 있는 문구, 색상, 이미지 또는 기타 모든 것을 기반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a)(1), (a)(2) 및 (b)(2))

**질문 12: 주법이 발효된 후에도 이미 매장에 진열된 가향 담배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발효 즉시 가향 전자 담배, 멘톨 담배, 소형 가향 시가 및 시가릴로, 가향 무연 담배, 가향 루스리프 셀프 롤링 담배 및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를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 의도로 소지하는 소매업체는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성립되며 주법 위반 시마다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

**질문 13: 2022년 11월 국민투표와 주법이 시행되는 시기 사이에 유예 기간이 있습니까?**

답: 아니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11월 8일 주 전체 총선에서 주법을 지지했으며 이 법은 투표 결과가 인증된 5일 후에 발효됩니다. 국무장관실의 투표 결과 인증은 12월 16일까지이므로 소매업체는 늦어도 12월 21일까지 법이 적용되는 가향 담배 제품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매업체는 12월 16일 이전에 투표 결과가 인증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한 제품의 판매를 더 빨리 중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매업체는 [국무장관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14: 가향 담배 제품 판매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까?**

답: 예. 주법이 적용되는 가향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소지한 모든

소매업체,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은 위반 시 유죄가 성립되며, 주법을 위반 할 때마다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f))

**질문 15: 제품이 가향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가향 담배 제품 판매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예. 주법의 정의에 따른 향미가 첨가된 제품을 파악하고, 금지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소매업체, 대리인 또는 직원의 의무입니다. 가향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제안할 의도로 소지하는 모든 소매업체는 주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반에 대해 유죄입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b)(1) 및 (f))

**질문 16: 소매상이 아닌 사람이 가향 담배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까?**

답: 아니요. 본 주법은 소매업자, 대리인 또는 직원이 아닌 사람이 가향 담배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매업자는 소매점에서 대중에게 직접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자로 정의되며,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운영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a)(16) 및 (b)(1))

**질문 17: 이 주법은 일부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주법은 연방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FDA는 일부 가향 전자 담배에 대해 [시행 우선순위](#)를 정하지만, 캘리포니아의 가향 담배 판매법에 포함된 다른 많은 가향 담배 제품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법은 FDA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에도 적용되며, 여기에는 가향 일회용 전자담배, 멘톨 또는 토바코향 전자담배, 소형 시가 및 시가릴로와 같은 기타 가향 담배 제품, 가향 무연 담배, 가향 루스리프 셀프 롤링 담배 및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가 포함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

FDA는 담배의 특정 향으로 멘톨을 금지하고 시가의 모든 특정 향(담배향 제외)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제안된 이 규정은 FDA에서 아직 고려 중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 18: 시 또는 카운티에서 성인 전용 상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에 대해 가향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경우, 이러한 성인 전용 상점에서 가향 담배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주법은 지방 조례가 주법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는 한,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제한하는 모든 지방 조례를 대신합니다. 주법은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자판기를 포함하여, 모든 소매 장소에서 대부분의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g))

**질문 19:** 시 또는 카운티에서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멘톨은 면제하는 조례를 통과한 경우, 담배 소매업체는 멘톨 향 담배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주법은 지방 조례가 주법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는 한,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제한하는 모든 지방 조례를 대신합니다. 주법은 모든 멘톨 및 다음과 같은 기타 가향 전자 담배의 소매 판매를 금지합니다: 담배, 소형 시가와 시가릴로, 무연 담배, 루스리프 셀프 롤링 담배, 소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g))

**질문 20:** 시 또는 카운티의 기존 가향 담배 조례가 주법보다 더 제한적인 경우, 어떤 법을 따라야 합니까?

답: 지방 조례가 주법보다 더 제한적이고 모든 가향 담배 제품 또는 주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종류의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의 상점은 지방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법은 관할권이 가향 담배 판매 조례를 통과시키고 주법보다 더 제한적인 경우 기존 조례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g))

**질문 21:** 시 또는 카운티에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를 포함하여 모든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이미 있는 경우, 후카 소매상이 가향 시샤/후카 담배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니요. 주법은 지방 조례가 주법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는 한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제한하는 모든 지방 조례를 대신합니다. 지방 조례가 주법보다 더 제한적인 경우, 해당 관할 구역의 매장은 지방 조례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를 포함한 모든 가향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를 금지하는 지방 조례는 주법보다 더 제한적이므로 해당 관할권의 법률로 적용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g))

**질문 22:** 편의점에서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답: 해당 편의점은 주법에 정의된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 판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시샤/후카 담배 소매상은 1) 담배 판매를 위해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2) 상시 21 세 미만인 자가 구내에 있거나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3) 담배 제품의 소매 판매와 관련된 모든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4) 구내에서 담배 제품의 소비가 허용되는 경우 노동법 섹션 6404.5 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담배 소매점 구내에서 담배 제품 소비와 관련된 모든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c))

**질문 23:** 21 세 이상 성인은 가향 담배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답: 주법은 소매점이 모든 가향 전자 담배, 멘톨 담배, 소형 가향 시가 및 시가릴로, 가향 무연 담배, 가향 루스리프 셀프 롤링 담배 및 담배 제품 향미 강화제를 나이에 상관 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소매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21세 이상의 성인은 가향 루스리프 파이프 담배, \$12 이상의 도매 가격의 가향 프리미엄 시가,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를 이러한 제품 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허가된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 주법은 또한 21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 제품 또는 담배 용품을 판매, 제공 또는 어떤 식으로든 공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업 및 직업 법 섹션 22958, 형법 섹션 308(a)(1)(A)(i))

**질문 24: 성인 전용 상점에서 가향 담배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까?**

답: 주법은 성인 전용 상점의 소매점을 포함한 모든 담배 소매상이 가향 전자 담배, 멘톨 담배, 소형 가향 시가 및 시가릴로, 가향 무연 담배, 가향 루스리프 셀프 롤링 담배 및 담배 제품 가향 강화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성인 전용 상점의 소매점은 가향 루스리프 파이프 담배와 가향 프리미엄 시가를 도매가 \$12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를 판매하려면 소매업체는 1) 담배 판매에 대한 유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2) 상시 21세 미만인 자가 구내에 있거나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3) 담배 제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4) 구내에서 담배 제품 소비가 허용되는 경우, 소매업체는 노동법 섹션 6404.5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담배 소매점 구내의 담배 제품 소비와 관련된 모든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b)(1)(c), (d) 및 (e))

**질문 25: 시샤 또는 후카 담배 바/라운지 실내에서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 제품을 흡연할 수 있습니까?**

답: 시샤 또는 후카 바 또는 라운지는 주법에서 정의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후카 담배 소매업체는 1)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2) 상시 21세 미만인 자가 구내에 있거나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3) 담배 제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4) 구내에서 담배 제품의 소비가 허용되는 경우, 소매업체는 노동법 섹션 6404.5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담배 소매업체 구내의 담배 제품 소비와 관련된 모든 주 및 지역 법률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c))

주법은 사업장이 "담배 소매점 또는 도매점" 또는 "개인 흡연자 라운지"의 조건을 갖춘 경우, 후카 바/라운지 실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합니다. "담배 소매점 또는 도매점"은 담배 제품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정의되며, "개인 흡연자 라운지"는 담배 제품 사용 전용 "담배 소매점 또는 도매점"에 부속된 밀폐된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노동법 섹션 6404.5(e)(2)(A) 및 (B)). 고객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후카 바 또는 라운지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 섹션 6404.5 및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의견서 No.09-507)

소매업체는 가향 담배 제품의 판매 또는 후카 담배 라운지/바의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기타 주 또는 지역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가향 시샤 또는 후카 담배 판매 금지 또는 후카 바/라운지에서의 흡연 금지와 같이 주법보다 더 제한적인 법률이 제정된 관할 구역의 상점은 관할 구역의 더 제한적인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안전법 섹션 104559.5(g))